

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경관생태관리요원)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경관생태관리요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연번	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 예정부서	담당예정 직무
1	경관 생태 관리 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	1명	2년 (주당35시간)	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	- 용산공원 광역녹지축 형성계획 관리 및 대응 - 용산공원 주변부 경관 형성 및 생태계획 관리 - 생태공원 조성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-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- 용산공원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- 지역·연령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[기준알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](#))

연번	구 분	응시자격요건
1	경관생태관리요원 (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)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◇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, 연구소, 학술·연구단체,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·도시설계·도시개발·도시재생 분야의 조경·경관·생태·공원녹지 관련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◇ 우대요건 - 조경, 경관, 생태, 공원녹지,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경기사,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소지자

- ※ '경력'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※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
4. 보수 수준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※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7급(상당)	70,782	50,272
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(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7. 23.(목) ~ 7. 27.(월) / (3일간)
- 접수방법: 우편(등기) 또는 방문 접수 ※우편접수 권장/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
 -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,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
 - 방문접수 시간: 09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]

- 접 수 처: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
- 우편 접수: (우편번호 04524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서울특별시청 11층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용산입체도시기획팀 인사담당
- 방문 접수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, 서울특별시청 11층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인사담당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※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(서류 분실 방지 목적)

○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장 소
시험공고	2026. 7. 16.(목)	서울시 누리집 등
응시원서 접수	2026. 7. 23.(목) ~ 7. 27.(월)	<u>우편 및 방문 접수</u>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8. 7.(금) (예정)	서울시 누리집 등
면접시험	2026. 8. 11.(화)	별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8. 14.(금) (예정)	서울시 누리집 등
최종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	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: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 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용산입체도시담당관에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: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○ 응시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(7급 7,000원)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(매출전표) 또는 첨부(납부 확인서)
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**납부확인서**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. (판매장소: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-2133-7908)
- ※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취급하나,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구매하여야 합니다.
- ☞ 자치구 수입증지(매출전표)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
- ※ 온라인 구입은 ETAX홈(etax.seoul.go.kr)에서 절차(신고납부 → 서울시 채용수수료)에 따라 하면 됩니다.
- ※ 원서접수처(용산입체도시담당관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.
- ※ **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◆ 수입증지 구입 안내 ◆

1. 직접 방문 발급

- 직접방문: 서울시 열린민원실(신청사1층)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(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)
 - ▶ 서울시청 열린민원실: 현금 또는 신용카드(체크카드 가능)
 - *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(방문시 필히 지참)
 - *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(카드사용/가명점용), 부착
 - ▶ 구청 재무과: 카드만 사용 가능

2.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(ETAX) 발급: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「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」 메뉴에서 구매 가능

- ▶ 성명, 주민번호, 금액(5천원, 7천원, 1만원, 중 선택) 입력 후 결제 구매(회원, 비회원 모두 가능)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> 신고납부 >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]

- ▶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,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홈 > 납부(영수증)확인 > 신고납부확인
납세번호 클릭 > 하단 **납부확인서 인쇄**]

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5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6) 1부
-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[첨부8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-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
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**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)**
-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
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즉시발급 증명 → 소득금액증명 → **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**
 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 - 관련 문의 : 국세청 (☎126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첨부 7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 8) 1부
-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어학검정서 등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.
(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용산입체도시기획팀 인사담당(02-2133-9438)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1부(따로 붙임)

직무기술서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경관생태관리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	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

주요업무	○ 용산공원 광역녹지축(남산~용산공원~한강) 형성계획 관리 및 대응 ○ 용산공원 주변부 경관 형성 및 생태계획 관리 ○ 생태공원 조성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○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○ 용산공원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 통 역 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·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 조성, 의사소통 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생태·경관·조경 및 공원녹지 분야의 전반적인 체계와 정책에 대한 지식 ○ 용산공원 조성계획과 주변지역 계획 간 정합성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적 기초지식 ○ 광역녹지축·경관축·보행축 및 생태환경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전문지식 ○ 용산공원의 역사·문화·생태적 특성과 관련 법령·정책 및 조사자료의 관리·활용에 관한 지식
------	---

응시자격요건	경력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◆ 해당 분야 경력 인정 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, 연구소, 학술·연구단체,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·도시설계·도시개발·도시재생 분야의 조경·경관·생태·공원녹지 관련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
우대요건	○ 조경, 경관, 생태, 공원녹지, 도시계획 또는 도시설계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○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조경기사,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소지자